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4년 12월 22일

- 회부일자 : 1994년 12월 22일

3. 개정이유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기준 등에 대한 현행 도 조례중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개정 보완하여 점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골자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 점용면적의 산정 (조례 제3조 제8항)

- 2개 이상의 관을 같은 목적으로 설치시 개개의 관이 크기를 각각 산정

→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함

· 점용료 산정기준표 (별표 1)

- 점용물의 종류란중 제2호 세분란의 송열관 다음에 「전기관, 통신시설관」을 추가

○ 점용료의 조정 (별표 2)

- 점용료 조정산식의 납부할점용료란 조정산식중 「100분의 220을 100분의 200」으로 함.

5. 검토의견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본도 조례가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조문을 개정 보완하여 점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 도로부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 따로 붙임 "

붙 임 : 개정조례안 1부.